

성종과 훈구 공신의 권력관계에 대한 검토

—성종과 훈구 공신은 대립적 관계였는가—

송웅섭*

〈차 례〉

1. 머리말
2. 공신들의 幼主 保導와 위상 확대
3. 정난공신의 死去와 공신 권력의 퇴조
4. 성종의 공신 비호 및 처벌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성종과 훈구 공신의 관계를 당대적 맥락 속에서 검토한 뒤, 성종 대 정치 상황 속에서 국왕과 공신 간에 형성된 권력관계를 새롭게 이해해 보고자 한 연구이다. 통설의 사림 서사에서는 사림의 성장에 따른 정치 및 사회 변동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성종과 훈구 공신을 대립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왕을 배제한 관료 사회의 분화를 용인하지 않던 조선 전기 정치 환경 속에서, 국왕과 훈구 공신을 대립적인 관계로 분리시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성종은 공신들의 보필 속에 幼主로서의 난관을 극복해 나가면서도, 대간의 탄핵으로부터 공신들을 비호해 주거나 군주를 기망한 공신을 사사시키는 등 군주로서의 권위를 적절하게 행사하고 있었다. 성종 대 공신들이 처한 상황은 훈구 공신들의 死去와 세대교체, 원상제의 혁파와 같은 흐름 속에서 공신권력 자체가 쇠퇴하는 형국이었다. 세조 대처럼 군주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 공신들의 권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종 대의 정치 상황은 강력한 공신권력에 맞서 국왕이 사림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용납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공신권력의 퇴조에 따른 관료조직 전반에 대한 군주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방식의 왕권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대적 맥락에 입각해 사림 서사를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성종, 훈구 공신, 원상, 권력관계, 사림 서사

* 충신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1. 머리말

16세기 사회기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재지 사족을 중심으로 한 사림정 치론에 입각해 있다.¹⁾ 즉, 성종~선조 대에 이르는 시기를 ‘사림의 등장 →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 → 사회의 발생 → 사림의 재등장 → 사림파의 집권 → 붕당정치의 성립’이라는 사림의 성공 서사로 기술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이 같은 ‘사림 서사’에 입각한 사회기에 대한 이해는 당파성론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²⁾ 그 결과 ‘사회와 당쟁으로 얼룩진 16세기’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이 시기를 사림이라는 개혁 세력의 등장에 따 른 붕당정치의 성립 과정으로 바라보게 되었다.³⁾

서사는 주요 사건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이자, 동시에 그 같 은 이야기의 구조와 시각을 결정짓는 프레임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사 립 서사의 구축은 사림에 대한 정의는 물론 이 시기 제반 정치 주체들의 성 격과 역할을 규정짓는 것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사림 서사 속에서 사림은 재지 중소지주로, 훈구 공신들은 권귀화된 정치세력으로, 국왕은 사림파의 제휴가 필요했던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사림의 등장은 그 자체로는 사림들의 자발적인 정계 진출이었지만, 국왕은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삼사 와 같은 언론기관에 사림을 적극적으로 기용했고, 국왕과 훈구 공신들 사이 에는 갈등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설정이 뒤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사림의 등 장과 국왕과의 연대, 그리고 훈구 공신들과의 대립이라는 설정은 성종 대에 만 국한되지 않고 중종 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구도 속에 국왕의 역할은 사림의 등장과 정착을 돕는 부차적인 존재로, 훈구 공신 들은 권귀화된 권력 집단과 같은 부정적인 세력으로 주변화되었다.

한편, 기왕의 연구 가운데는 훈구 개념을 통설과는 다른 입장에서 접근하

-
- 1) 한영우, 『王權의 確立과 制度의 完成(世祖 - 成宗)』, 『한국사』 9, 1974; 한충희, 『왕권의 재확립과 제도의 완성』, 『신편한국사』 22, 2002.
 - 2) 이태진, 『黨派性論 批判』, 『한국사시민강좌』 1, 일조각, 1987.
 - 3) 이태진, 『朝鮮時代의 政治的 갈등과 그 해결-士禍와 黨爭을 중심으로-』,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 明』, 법조사, 1985.

거나,⁴⁾ 훈구대신은 존재했지만 사림파에 상대되는 정치세력으로서의 ‘훈구파’의 존재는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제기하며,⁵⁾ 통설의 구도가 갖는 한계를 드러낸 바가 있다. 필자 역시 그간의 연구를 통해서 이 같은 사림 서사와 그 내용을 구성하는 설정들이 갖는 한계를 지적해 왔다. 흔히 사림파의 활동 영역으로 전제되었던 대간의 언론 활동이 왕권 강화보다는 왕권 제약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삼사의 구성은 관료조직 내에서도 청요직이라 불리는 엘리트 관료들의 유기적인 인사이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기묘사화의 발생은 조광조와 청요직 관료들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중종의 기획 속에 일어났음을 확인하며 ‘사림 서사’의 기본 구도가 갖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다.⁶⁾

본고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해 그동안 사림 서사 속에서 다소 부차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국왕과 훈구 공신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성종 대를 중심으로 국왕과 훈구 공신이 각각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종에게 있어서 훈구 공신은 어떤 도움과 부담을 주고 있었는지, 훈구 공신은 과연 성종이 새로운 세력을 필요로 할 만큼 성종의 왕권을 침해하고 있었는지, 성종이 공신을 비호하거나 처벌한 경우는 없었는지 등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림 서사의 설정에서 벗어나, 성종과 공신 사이의 관계를 당대적 맥락에 입각해 확인해보고, 15세기 말 상황에서 공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 공신 권력이 쇠퇴할 경우 그것이 국왕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등을 고민해 보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4) 김범, 「조선전기 院相 家門의 변천과 그 의미 -動舊勢力 파악의 한 사례연구-」, 『史叢』 49, 1999.

5) 유승원, 「조선시대 ‘양반’ 계급의 탄생에 대한 시론」, 『역사비평』 79, 2007.

6) 송웅섭, 「朝鮮 成宗의 右文政治와 그 귀결」, 『奎章閣』 42, 2013; 송웅섭, 「조선 전기 청요직의 위상과 인사이동 양상」, 『韓國思想史學』 55, 2017; 송웅섭, 「기묘사림과 ‘공론지상주의」, 『역사와 현실』 108, 2018.

2. 공신들의 幼主 保導와 위상 확대

즉위 1년 2개월 만에 예종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자, 죽은 의경세자의 차자 잘산군이 즉위했다. 정희왕후는 왕실 내 최고 어른으로서 수렴청정을 시작하고,⁷⁾ 신숙주·한명회 등은 원상으로서 대비와 어린 성종을 보필했다.⁸⁾ 세조 사후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두 번씩이나 군주가 교체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왕실과 공신 출신의 원상들은 수렴청정과 원상제를 매개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며 어린 성종의 보도에 힘을 기울였다. 덕분에 유주 성종은 대비와 원상들의 도움 속에 큰 변고 없이 국정에 대한 경험을 쌓아갈 수 있었다. 어린 나이에 세자 시절조차 거치지 않고 즉위한 성종이 즉위 초반을 무난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원상들의 적절한 보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원상들 가운데 상당수는 세조의 집권과 즉위를 도왔던 정난공신과 좌익공신 출신으로서,⁹⁾ 이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성종을 보필해 나갔다. 첫째, 세조의 독단에 의해 무리하게 시행되었던 제도들을 조정해 나가며 국정 및 사회 안정을 꾀하였다. 호패법의 폐지, 상피법의 부활, 서경법의 부활, 시간원 인원의 복구, 1일 3강 원칙의 경연제 시행, 향교 교생의 액수 확대 등을 통해, 무리하게 시행된 제도 변경을 조정하고 공적 제도 운영의 회복에 기초를 다졌다.¹⁰⁾

둘째, 어린 성종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사를 사전에 제거해, 성종의 보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했다. 구성군 준의 옥사가 이에 해당한다.¹¹⁾ 임영대군의 아들이자 이시애의 난을 진압해 젊은 나이에 영의정에 오른 구성군은 세

7) 『예종실록』 권8, 예종 1년 11월 28일(무신); 김우기, 『朝鮮 成宗代 貞熹王后의 垂簾聽政』, 『조선사연구』 10, 2001; 임혜련, 『朝鮮時代 垂簾聽政의 政비과정』, 『조선시대사학보』 27, 2003.

8) 김갑주, 『院相制의 成立과 機能』, 『동국사학』 12, 1973; 김원혁, 『조선 성종대 ‘領敎率以上’ 집단의 성립과 정치활동』, 『한국사론』 64, 서울대 국사학과, 2018.

9) 성종의 친정 이전 원상에 임명된 사람은 신숙주·한명회·구치관·박원형·최항·홍윤성·조석문·김질·김국광 등 총 9인이다. 이 가운데 정난공신 출신은 신숙주·한명회·최항·홍윤성 등 4인, 좌익공신은 구치관·박원형·조석문·김질 등 4인, 적개공신은 김국광 1인이다.

10) 송웅섭, 『성종의 즉위와 국정운영방식의 변화』, 『史學志』 49, 2014.

11) 『성종실록』 권2, 성종 1년 1월 2일(신사)

조에게는 활용도가 높은 우익이 될 수 있었지만, 성종과 같은 유주에게는 우환이 될 소지가 있었다. 그 결과 구성군은 성종 즉위 직후 가장 먼저 제거된 종실 인사가 되었다. 한편, 구성군 준의 제거가 성종의 안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면, 좌리공신의 책봉은 그러한 위협을 처리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서,¹²⁾ 성종에게 우군을 붙여준 일이자 세조 대의 공신 권력을 연장한 처사라고 할 수도 있다. 원상들은 성종의 안정된 보위를 위해 구성군 옥사와 좌리공신의 책봉을 도모하거나, 적어도 이 같은 처사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성종의 생부인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추송해 성종의 정통성과 권위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¹³⁾ 종묘에 모시는 일과 관련해서는 원상들 중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인사가 있었지만,¹⁴⁾ 원상들과 공신들 대부분은 결국 성종의 권좌를 강화하기 위해 덕종 추송과 부모 사업에 협력했다.¹⁵⁾ 이처럼, 성종이 즉위 초반의 불안한 요소들을 극복하고 호학의 군주로서 우문정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원상들의 이 같은 보도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원상들을 중심으로 성종의 보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원상들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이는 성종 즉위 후 종친들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보다 분명해진다. 세조의 치세 하에서 ‘兪宗’ 혹은 ‘內宗親’ 등으로 분류되며 세조로부터 각별한 대우를 받던 종친들은 세조 정권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기도 했다.¹⁶⁾ 그러나 세조와 같은 카리스마를 가진 군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거기에 예종의 갑작스런 사망과 어린 성종의 등장으로 정국에 불안 요소가 발생하면서, 종친들은 권력의 핵심부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
- 12) 全宗燮, 『朝鮮 成宗朝 佐理功臣에 關한 一考察-그 性分의 動向을 中心으로-』, 『大丘史學』 18, 1980; 鄭杜熙, 『朝鮮 世祖-成宗朝의 功臣研究』, 『農檀學報』 51, 1981.
 13) 강제훈, 「조선 초기 勳戚 韓明澮의 관직 생활과 그 특징」, 『역사와실학』 43, 2010; 한형주 「성종 대 의경왕의 추송과 연은전의 운영」, 『藏書閣』 40, 2018.
 14) 『성종실록』 권59, 성종 6년 9월 16일(임술)
 15) 『성종실록』 권59, 성종 6년 9월 24일(경오); 25일(신미)
 16) 韓忠熙, 『朝鮮 世祖代(1455~1468) 宗親研究』, 『韓國學論集』 22, 1995; 韓忠熙, 『朝鮮 世祖代의 內宗親에 대하여』, 『慶北史學』 21, 1998.

일례로, 성종 원년 효령대군 등이 문무관의 예에 따라 종친들에게도 代加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상들이 반대해 무산되었다. 문무관의 代加 역시 미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가 자체를 가급적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다.¹⁷⁾ 성종 7년에도 종친들이 다시 한 번 종친 가자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국대전』에 규정이 없음을 들어 성종이 완곡하게 거부했고, 정창손·한명회 등이 반대해 끝내 수용되지 않았다.¹⁸⁾

성종 원년 10월 사간원에서는 종친의 과거 응시 금지를 요청했다. 종친의 부시는 과거를 설치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 『경국대전』에도 없는 조항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성종은 세조 대부터 시행된 일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¹⁹⁾ 하지만, 성종 2년 사간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금지를 요청하자, 정인지·신숙주 등의 원상들도 금지하는 것이 옳다며 사간원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²⁰⁾ 이날 성종의 수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나 결국 금지되었는데, 이는 『경국대전』에서 종친의 사환을 금지하는 항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밖에도 종친들을 대표해 밀성군 이침이 대간의 종친 탄핵 금지를 요청했으나 역시 거부되었다. 밀성군은 종친의 범법을 단속하는 기관은 종친부이고 대간은 국왕의 허물을 간쟁하는 기관이라는 이유에서 대간의 종친 탄핵 금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좌리공신 출신의 도승지 신정은 대간이 종친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전례가 있으며, 이 역시 왕의 잘못을 간쟁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²¹⁾

결국 종친들의 대가 불허·과거 응시 금지·대간 탄핵 허용 등을 통해 볼 때, 이전에 누려왔던 종친의 특권들이 제도적으로 규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한명회 등이 원상제 운영을 통해 국정 주요 사안에 여전히 영향력

17) 『성종실록』 권3, 성종 1년 2월 1일(경술)

18) 『성종실록』 권67, 성종 7년 5월 21일(계해) “傳曰 大典 垂之萬世 不可改也. 宰相之議 亦云不可改 今不可例以文武官而加階. 文武官自六寺七監積其勤勞 故計仕而加資矣 宗親則無勤仕之處 豈可計仕加資. 然予當爲加階陞品之地矣.”; 『성종실록』 성종 권69, 7년 7월 10일(신해)

19) 『성종실록』 권8, 성종 1년 10월 19일(계해); 20일(갑자)

20) 『성종실록』 권10, 성종 2년 5월 20일(임진)

21) 『성종실록』 권50, 성종 5년 12월 24일(을사)

을 발휘하고 있던 상황과 대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진들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과는 달리, 공신들의 영향력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었다. 이들의 강화된 위상은 원상제 폐지와 관련한 소동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성종 3년 경연에서 사헌부 지평 박시형은 성종이 서무를 친결할 정도로 성숙해진 상황에서, 원상제의 폐지를 완곡하게 요청했다. 노성한 대신들을 아침 저녁으로 승정원에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었지만, 이면에는 원상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에도 정작 중요한 사안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불만이 깔려 있었다.²²⁾

지평 박시형의 발언은 즉각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우선, 한명회 등의 원상들이 ‘자신들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라며 피험과 동시에 원상제 폐지를 건의했다.²³⁾ 이에 대비는 ‘마음을 불편하게 한 말에 개의치 말라’며 만류하는가 하면, 폐지를 요청한 박시형은 자신의 건의가 사헌부 동료들과 논의한 것이 아닌 단독으로 한 발언이라며 대죄를 청했다.²⁴⁾ 사헌부에서는 박시형의 독단적인 발언의 잘못을 지적하는 한편, 그렇더라도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자신들이 동료의 언론을 비난하며 피험하도록 한 처사 역시 잘못된 것임을 이유로 피험함으로써 사헌부 전체가 체직되고 말았다.²⁵⁾

성종 3년의 원상제 폐지 문제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원상들이 小司의 제조까지 담당하며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었고, 이들의 위세에 놀려 사헌부 관료들이 동료의 원상제 폐지 건의를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독단으로 치부하며 피험을 압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공신으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원상제라는 제도적 장치 속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

22) 『성종실록』 권19, 성종 3년 6월 19일(갑신)

23) 위의 주 참조. “院相韓明澮成奉祖啓曰 朴時衡 雖不明言之 其意則謂大臣雖坐政院 無益於治道也. 臣等請避嫌. 且古無院相 世祖朝因中朝使臣之來 命臣明澮與具致寬 坐政院議事 其後因仍至今 臣等曾欲請免 恐以臣等爲怠惰厭仕 故不敢耳. 大王大妃傳曰 院相非自今始 況主上年少 予未有知 冀賴夾輔之力 而所司言之 使卿等不安於心. 然毋以爲嫌 …”

24) 위의 주 참조. “朴時衡來啓曰 今朝 臣請罷院相 此事臣不與本府同議而啓之. 退而思之 實爲顛倒 請待罪. 傳曰 人各有心 言之可也. 何待罪也. 時衡曰 本府 凡有所啓必共議 然後言之. 臣不議而啓 待罪耳. 傳 毋嫌.”

25) 『성종실록』 권19, 성종 3년 6월 21일(병술)

하고 있던 세조 아래서 공신이자 대신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양상과는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원상들의 높은 위상과 그에 비례해 영향력을 행사했던 양상들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종 원년 1월 한명회와 신숙주는 2품 이상 대신들에게 시행되는 분경금지 방식이 너무 과도해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과의 왕래조차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세조 대 분경 방식에 의거해 분경을 시행하도록 조치해 주었다.²⁶⁾ 성종 3년 8월 경기진휼사로 나간 한명회와 그를 수종하는 인사들로 역마다 소란스럽고 부담이 큼을 시간원에서 아뢰었음에도 별다른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²⁷⁾ 성종 3년 12월에는 한명회의 부당한 인사 개입을 문제 삼던 사헌부 관리들이 언근을 추궁당하다 좌천되기도 했으며,²⁸⁾ 성종 5년 4월 공혜왕후 상례 시 국장도감에 신숙주 등이 인척을 낭청에 의망했다며 사헌부에서 이를 문제 삼다가 도리어 좌천된 일도 있었다.²⁹⁾ 성종 5년 10월 야대에서 승지 김영견이 대신들이 왕께 인사청탁을 자주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성종은 인사청탁이 아니라고 변호해 주었으며,³⁰⁾ 5년 12월 대사간 정팔이 고을의 둔전을 수령들이 재상에게 뇌물로 준다며 어사를 보내 추쇄하도록 요청하자, 원상 조석문이 증빙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전후 수교 절목을 살필 것을 요청하면서 무마되기도 했다.³¹⁾

이처럼 성종 즉위 후 원상제의 시행 속에서 한명회·신숙주 등은 유주의 보필이라는 책임하에 세조에 의해 자의적으로 집행되던 제도들을 수정하거나 성종이 군왕으로서의 자질과 적절한 국정 수행 능력을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원상들의 위상과 영향력은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고, 성종 역시 이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다.

26) 『성종실록』 권2, 성종 1년 1월 11일(경인)

27) 『성종실록』 권21, 성종 3년 8월 9일(계유)

28) 『성종실록』 권25, 성종 3년 12월 8일(경오)

29) 『성종실록』 권41, 성종 5년 4월 24일(무인)

30) 『성종실록』 권48, 성종 5년 10월 16일(무술)

31) 『성종실록』 권50, 성종 5년 12월 11일(임진)

3. 정난공신의 死去와 공신 권력의 퇴조

성종 즉위의 특수한 상황에서 원상들 및 훈구 공신들의 영향력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주목할 점은 이들의 권력이 성종 대 내내 공고하게 지속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통설에서는 親政을 계기로 성종이 훈구 재상들을 견제하기 위해 사림파와 언론기관을 지원하는 가운데 훈구 재상들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탄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훈구 세력의 권력이 약화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³²⁾ 하지만 훈구대신들의 권력 약화가 그들을 견제하려는 성종의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친정을 전후로 한 시기의 공신들의 권력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용과 이들을 통한 언론의 활성화를 피해야 할 만큼 강력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성종 중후반에 이르러 성종의 대간에 대한 제어 역시 수월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언론과 국왕의 관계를 우호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 성종이 인관들과 연대해 훈구 공신들과 대립했다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³³⁾ 그러면 성종대 훈구 재상들로 대표되는 공신들의 권력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성종이 ‘사림파’라는 새로운 세력을 기용해야 할 만큼 강한 것이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오히려 세조 대 이래로 유지되던 공신권력 자체가 점차 쇠락해 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같은 이해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기초한다.

첫째, 주목되는 부분은 1476년(성종 7) 親政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숙주·홍윤성·최항 등과 같이 공신 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정난·좌익공신 출신들이 연이어 사망하고 윤필상·노사신·허중·홍응 등이 새로운 재상군

32) 최이돈, 『조선중기 사림정치구조 연구』, 일조각, 1994, 60~61쪽.; 김범, 『조선전기의 왕권과 정국 운영』, 고려대학사학위논문, 2005, 22~39쪽. 한편 김범은 국왕의 정치적 역할을 보다 강조하면서, 홍문관의 언관화는 대간의 발언권이 기대 이상으로 확대되자 이에 대한 억제책으로 대안적 언론기관의 육성을 통해 대간을 견제함으로써 국왕·대신·삼사의 ‘정치적 정립구도’를 재정비하려는 성종의 구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어, 최이돈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범, 앞의 논문(2005), 40~63쪽.

33) 송용섭, 「조선 성종대 전반 언론의 동향과 언론 관행의 형성」, 『한국문화』 50, 2010; 송용섭, 「성종 대 臺諫 避嫌의 증가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2, 2012.

으로 부상하는 등, 공신 그룹 내부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 다. 그리고 정난·좌익공신 출신 가운데 생존해 있던 한명회·정창손 등도 더이상 공신 권력의 헤게모니를 아우르는 구심점으로 활동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성종의 친정을 전후로 한 시기에 공신 세력이 위축되었던 일차적인 이유는 공신들 내부의 세대교체와 구심점의 약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종대 의정부의 삼정승을 비롯하여 좌우찬성 및 참찬, 그리고 육조의 판서에 올랐던 인물들 82명 가운데, 공신에 책봉된 사람은 54명으로 전체의 약 65.8%에 달하고 있다.³⁴⁾ 이는 중복 임명된 경우를 제외한 수치로서 성종 치세 동안 공신 출신자들이 위 직책에 재직하고 있던 비율은 훨씬 더 높았을 것이고,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러한 현상은 보다 뚜렷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세조대에 이어 성종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공신 출신 인사가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비록 공신들이 여전히 고위 관직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었지만, 공신 가운데 정난·좌익공신의 비중이 시간이 흐를수록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신 책봉자 54인 중에서 정난·좌익공신 출신자는 13인(24%)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의 사망 시점을 보았을 때 13인 가운데 1476년(성종 7) 성종의 친정 이전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5인(약 38.4%)이었고 1478년(성종 9)까지는 9인(약 69.2%)이, 1487년(성종 18)까지는 12인(91.6%)이 사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공신권력의 중핵을 이루고 있었던 정난·좌익공신 대부분이 사망하고 공신 그룹 내부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난·좌익공신의 상당수가 사망하는 1478년(성종 9, 9인, 약 69.2%)을 기준선으로 삼았을 때, 1478년(성종 9) 이후 의정부와 육조에 진출해 있는 41인의 공신들 가운데 적개·익대·좌리공신 출신이 대부분을 점하게 되고, 그중에서도 성종 대에 책봉된 좌리공신이 가장 높은

34) 김범 『朝鮮 成宗~中宗代 의정부·육조·삼사 주요관직의 인사이동 상황과 그 의미』, 『동방학지』 126, 2004 참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원상들의 몰년을 살펴보면 한층 더 명확해진다. 원상에 참여하고 있었던 핵심 공신들은 성종 즉위 직후부터 하나둘 사망해 가다가, 1476년(성종 7) 원상제가 폐지되는 단계에서는 13명의 원상 가운데 이미 5명이 사망한 상태였는데, 이 가운데는 신숙주와 홍윤성 같은 핵심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로도 원상들은 차례로 사망하여 1480년(성종 11) 김국광의 사망 이후 생존하고 있던 원상으로는 윤사훈·정창손·한명회 등 세 사람뿐이었다.³⁵⁾

결국 성종이 친정을 시작한 직후에는 대부분의 원상이 사망함에 따라 세조 이래 공신 권력의 핵심을 이루던 중심축이 해체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한명회·정창손 등이 생존하여 여전히 조정에서 중임을 맡고 있었지만, 정난·좌익공신의 대부분이 사망한 상태에서 이들만으로 위축되어 가는 공신 권력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둘째, 원상제의 폐지는 공신들의 영향력 약화에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정희왕후는 1475년(성종 6) 11월 ‘강자평의 진주목사 임명이 대왕대비의 특명’이라는 내용의 익명서 사건을 계기로 철렴 의사를 밝혔다.³⁶⁾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난 1476년(성종 7) 1월 13일 원상들에게 철렴을 밝히는 언문 편지를 전달함으로써 이를 공식화했다.³⁷⁾

수렴청정의 폐지는 자연히 원상제의 폐지를 압박하는 의미를 갖는다. 幼主를 보좌하는 뜻에서 시행된 수렴청정이 폐지되는 마당에 동일한 목적을 가진 원상제가 지속되어야 할 명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었다. 더구나 대비가 성종의 독자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인정하여 철렴을 단행한 상황에서 원상제의 유지를 고집하는 것은, 원상들이 국왕의 업무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마저 있었다.³⁸⁾

한편, 한명회의 입장에서는 대비의 철렴을 적극적으로 만류할 필요가 있었

35) 송용섭, 『조선 성종대 공문정치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42~43쪽.

36) 『성종실록』 권62, 성종 6년 12월 13일(무자)

37) 『성종실록』 권63, 성종 7년 1월 13일(무오)

38) 『성종실록』 권63, 성종 6년 12월 13일(무자)

다. 공신들과 자신에 대한 대간의 압박이 점점 강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원상 제라는 울타리마저 사라질 경우 그의 입지는 그만큼 축소되기 마련이었다. 더구나 1475년(성종 6) 6월에는 신숙주가,³⁹⁾ 9월에는 홍윤성이 사망했기에, 40) 원상제의 폐지가 한명회 등의 원로 공신들에게는 더욱 이롭게 느껴질 소지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명회는 ‘철렴은 신민을 버리는 처사’라는 실언을 하게 되었고, 이에 성종은 여러 정승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다.⁴¹⁾

한명회의 실언은 대간의 즉각적인 탄핵을 초래했다. 그렇지 않아도 대간의 표적이 되고 있던 차에, 국왕의 권위와 관계된 그의 말 실수는 대간으로서는 한명회를 압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에 대간에서는 대비가 ‘성종에게 정사를 되돌리는 일에 무슨 옳지 못한 이유가 있는가’라면서 한명회에 대한 국문과 파직을 요청했다.⁴²⁾ 그리고 탄핵 수위를 점차 높여갔다. 한편 원상 윤자운과 윤사흔 또한 한명회의 잘못에 대해 추궁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한명회의 발언이 원상들 전체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한명회 개인의 생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⁴³⁾

이 문제는 유자광이 한명회 및 대간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하면서, 44) 그리고 대간 내부의 이견 노출 등으로,⁴⁵⁾ 논란이 좀 더 지속되었다. 결국 성종은 탄핵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대간을 체직시켜 사건을 일단락시켰다.⁴⁶⁾ 동시에 한명회에 대해서는 좌의정에서 체직시켜 그가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게 했다.⁴⁷⁾

한명회가 좌의정에서 물러나게 되자 곧바로 원상제의 폐지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었다. 예빈시 부정 송극창은 윤대에서 연로한 원상들이 하루걸러 입대

39) 『성종실록』 권56, 성종 6년 6월 21일(무술)

40) 『성종실록』 권59, 성종 6년 9월 8일(갑인)

41) 『성종실록』 권63, 성종 6년 1월 14일(기미)

42) 『성종실록』 권63, 성종 6년 1월 14일(기미): 20일(을축)

43) 『성종실록』 권63, 성종 6년 1월 14일(기미)

44) 『성종실록』 권64, 성종 7년 2월 19일(계사)

45) 『성종실록』 권65, 성종 7년 3월 11일(갑인)

46) 『성종실록』 권65, 성종 7년 3월 13일(병진)

47) 『성종실록』 권66, 성종 7년 4월 3일(병자)

하는 것은 공신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며 원상제의 혁파를 건의하자, 성종은 원상들에게 이를 의논하도록 하였다.⁴⁸⁾ 성종은 원상들의 폐지에 대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다음 달 대사헌 윤계검 등이 친정의 실시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의정부 서사제의 실시, 원상제의 혁파, 풍문 탄핵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소를 올리자, 老大臣들을 대접한다는 명분으로 원상제의 혁파를 허락하였다.⁴⁹⁾ 1472년(성종 3) 대간에서 원상제의 폐지를 건의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헌부의 다른 관원들이 함께 논의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자신들과 발언자를 구분하던 상황과 비교해 볼 때,⁵⁰⁾ 원상제가 폐지되는 시점에서의 원상들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상태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결국 성종 6년 무렵의 신숙주와 홍윤성의 사망·수렴청정의 폐지·한명회의 실언에 따른 체직·원상제의 폐지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한명회·신숙주·정인지 등으로 대표되는 정난공신 출신의 핵심 훈구 재상들의 잇따른 사거 속에서, 계유정난 이래 20여 년 넘게 유지해 온 공신 권력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을 보게 된다. 더이상 세조 대와 같은 공신들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만년에 이르러서는 권세가 이미 떠나자 빈객이 이르지 않아 적막한 탄식을 했다’는 한명회의 줄기에 수록된 사신의 논평은 이 시기 공신들의 권력의 퇴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 할 수 있다.⁵¹⁾

셋째, 대간의 탄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공신들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공신들의 운신의 폭이 축소되어 갔다.⁵²⁾ 공신들 가운데서도 탄핵이 집중된 오백창·김국광·양성지 등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정황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오백창의 경우, 좌리공신에 책봉되기 전인 성종 1년 8월부터 탄핵이 시

48) 『성종실록』 권66, 성종 7년 4월 19일(입진)

49) 『성종실록』 권66, 성종 7년 5월 15일(정사)

50) 『성종실록』 권19, 성종 3년 6월 19일(갑신)

51) 『성종실록』 권209, 성종 18년 11월 14일(기유)

52) 주목할 부분은 성종 대 언론의 활성화는 친정 이후 성종이 사립과를 등용해 훈구 공신을 견제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종 대 언론의 활성화는 성종의 즉위와 함께 거의 동시적으로 시작되었고, 공신과 대신에 대한 탄핵 역시 성종 즉위 직후부터 시작되고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작되어⁵³⁾ 성종 4년 10월 그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지속되었다.⁵⁴⁾ 그는 친정 이전 가장 많이 탄핵을 당한 인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한명회의 측근으로도 분류된다.⁵⁵⁾

오백창에 대한 탄핵은 경상도 관찰사 재직 과정에서의 업무 미숙으로 본격화되었다.⁵⁶⁾ 대간에서는 신숙주와 한명회가 평안도 체찰사를 맡았을 당시 오백창이 그들의 종사관이 되어 여러 탐오한 행태를 벌인 것을 소급하며 그에 대한 탄핵을 강화했다.⁵⁷⁾ 성종은 공신을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며 거부했으나, 대간의 계속된 탄핵에 결국 경상도 관찰사직을 개차하며 封君(興原君) 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짓고자 했다.⁵⁸⁾ 하지만 대간에서는 오백창의 봉군 철회와 파직을 요청하며 탄핵을 이어갔고,⁵⁹⁾ 성종은 원상들과의 논의 끝에 고신 회수를 명하였다.⁶⁰⁾ 고신 회수 이후에도 대간은 오백창이 추국 과정에서 거짓을 고하며 군주를 기망했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을 요구했다.⁶¹⁾ 성종은 대간이 ‘이기기를 힘쓴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한편,⁶²⁾ 한명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백창의 고신을 돌려주고, 봉조하·행 부호군 등의 관직에 제수했다.⁶³⁾

이후로도 대간의 오백창에 대한 탄핵은 지속되었는데, 오백창은 스스로 상서하여 대사간 성준이 익명서를 투서했다며 대간과의 대면 질의를 요청했다.⁶⁴⁾ 그러나 오백창의 대간에 대한 공격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53) 『성종실록』 권7, 성종 1년 8월 10일(을묘)

54) 오백창과 관련한 사헌부의 마지막 탄핵은 성종 4년 4월 19일(무인) 조에 확인되며, 그로부터 수 개월 후인 4년 10월 14일에 오백창이 사망한다.

55) 『성종실록』 권17, 성종 3년 4월 16일(임오)

56) 『성종실록』 권11, 성종 2년 9월 14일(계미)

57) 『세조실록』 권14, 성종 4년 9월 2일(병술); 『세조실록』 권18, 5년 11월 7일(을유); 『성종실록』 권13, 성종 2년 11월 8일(병오) “之慶(저자주:大司憲金之慶)又啓曰:”慶尙道觀察使吳伯昌 本貪婪諛佞人也. 嘗爲從事官往平安道 觀察使欲贈貂皮 開所貯筒 伯昌竝其筒盡取之 又爲兵曹正郎 造軍士祿牌 受其祿. 爲人如此 何以責貪汚守令乎. 請罷之. 今內有國光 外有伯昌 朝廷何由清明 臣實痛心.”

58) 『성종실록』 권16, 성종 3년 3월 16일(임자); 3월 29일(을축); 권17, 3년 4월 2일(무진)

59) 『성종실록』 권18, 성종 3년 5월 2일(무술); 4일(경자); 권21, 3년 8월 3일(정묘)

60) 『성종실록』 권21, 성종 3년 8월 10일(갑술); 12일(병자)

61) 『성종실록』 권21, 성종 3년 8월 15일(기묘)

62) 『성종실록』 권21, 성종 3년 8월 17일(신사)

63) 『성종실록』 권24, 성종 3년 11월 11일(계묘); 권27, 4년 2월 7일(무진)

64) 『성종실록』 권31, 성종 4년 6월 5일(갑자)

되었다. 먼저 대비가 오백창의 잘못을 거론하며 원상에게 회의하도록 했고, 원상들은 오백창이 대신의 체모를 잃었다며 국문을 요청했다.⁶⁵⁾ 그리고 오백창으로부터 익명서를 투서했다는 혐의를 받은 대사간 성준이 사직을 요청하자,⁶⁶⁾ 성종은 오백창에 대한 국문을 수용하고 두 사람 모두를 파직했다.⁶⁷⁾ 결과적으로 오백창에 대한 탄핵은 만 2년 넘게 지속되다가 오백창이 익명서를 언급하며 대간을 공격한 일을 계기로 파직되며 종결되었다. 결과적으로 오백창에 대한 대간의 탄핵은 친정 이전부터도 공신들이 대간의 탄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김국광 역시 오백창 못지 않게 대간의 집중적인 탄핵을 받았던 공신이었다. 그는 적개·좌리공신으로서 원상에도 오른 인물이었다. 비록 정난·좌익공신 출신은 아니었지만, 실무에 능했기 때문에 세조로부터 ‘事知第一’이라는 친필을 하사받기도 했다.⁶⁸⁾ 세조 때에는 병조판서 재임 시절 매관매직을 일삼고 防納을 통해 축재했다는 혐의로 탄핵을 받았으나, 오히려 김국광을 탄핵한 대간이 하옥되는 등 그에 대한 세조의 신임은 매우 각별했다.⁶⁹⁾ 김국광은 성종대에 들어와서도 원상으로서 그리고 좌의정으로서 권력의 핵심부에 자리 잡았다.⁷⁰⁾ 그러나 세조 대와는 달리 대간의 주된 탄핵 대상이 되면서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성종 대 김국광과 관련해 처음으로 탄핵이 제기된 것은 그의 동생 김정광의 뇌물 수수와⁷¹⁾ 사위 이한의 방납 문제 및 좌리공신 참여 요구로 인한 것이었다.⁷²⁾ 특히 사위 이한의 좌리공신 참여 문제가 불거지자 대간에서는 원

65) 『성종실록』 권31, 성종 4년 6월 6일(을축)

66) 『성종실록』 권31, 성종 4년 6월 7일(병인)

67) 『성종실록』 권31, 성종 4년 6월 18일(정축)

68) 『성종실록』 권123, 성종 11년 11월 11일(정해) “光山府院君金國光卒 … 世祖常稱諳練 手書事知第一四字賜之”

69) 『성종실록』 권43, 성종 13년 7월 11일(갑술) “會司諫院正言金漬啓曰 右參贊金國光嘗爲兵曹判書 受賂除職 又多代納謀利 外間喧騰. 然皆無據可覈 未卽上達. … 卽命都承旨尹弼商 脫漬帽曳出 下諫院官吏等于義禁府獄.”

70) 『성종실록』 권4, 성종 1년 4월 6일(갑인)

71) 『성종실록』 권6, 성종 1년 7월 6일(임오); 권5, 성종 1년 5월 30일(정미); 권7, 성종 1년 8월 10일(을묘); 권8, 1년 12월 26일(기사)

72) 『성종실록』 권10, 성종 2년 6월 26일(정묘); 권11, 성종 2년 7월 22일(계사)

상·좌의정·경연관 등 김국광이 맡고 있던 모든 직책으로부터 파면시킬 것을 강경하게 요구하여,⁷³⁾ 김국광은 좌의정직에서 물러나게 된다.⁷⁴⁾ 성종은 체임 사유가 대간의 탄핵 때문이 아니라 김국광 자신이 사임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김국광의 체면을 살려줌과 동시에 계속되는 대간의 공세로부터 그의 나머지 직책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⁷⁵⁾

좌의정직 체임을 계기로 잠시 주춤했던 김국광에 대한 탄핵은 얼마 후 다시 재개되었는데,⁷⁶⁾ 그 후로도 김국광이 우의정에 제수되었을 때에도 되풀이 되었다.⁷⁷⁾ 대간에서는 그의 탐오한 전력을 거론함과 동시에 좌의정에서 파직된 자를 다시 우의정으로 임명할 수 없다며 임명에 반대였다. 성종 또한 김국광의 추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논박을 받았으므로 재상에 임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국광의 우의정 임명을 철회했다.⁷⁸⁾ 김국광이 대간의 발언에 대해 실정을 분변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했지만,⁷⁹⁾ 성종은 ‘탄핵을 받은 대신은 마땅히 문을 닫고 들어앉아 스스로를 반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간과 대변하려고 한다’면서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⁸⁰⁾ 이로써 김국광은 우의정에 임명되지 못했을 뿐더러 도리어 면박만 당한 셈이 되었고, 이후 김국광은 별다른 실적을 맡지는 않은 채 曾經政丞의 한 사람으로 국왕의 고문에 응하다가 1480년(성종 11)에 사망했다.⁸¹⁾

김국광의 이와 같은 수모는 세조 대 그를 탄핵한 간관이 오히려 처벌을 받았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상까지 역임하고 있던 김국광의 위상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성종 대에 들어와 공신들의 지위가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성지는 집현전 학사 출신의 실무형 관료로서, 세조 재위 기

73) 『성종실록』 권11, 성종 2년 7월 27일(무술)

74) 『성종실록』 권11, 성종 2년 8월 8일(무신)

75) 『성종실록』 권11, 성종 2년 8월 11일(신해)

76) 『성종실록』 권13, 성종 2년 12월 1일(무진)

77) 『성종실록』 권93, 성종 9년 6월 2일(임진)

78) 『성종실록』 권93, 성종 9년 6월 3일(계사)

79) 『성종실록』 권93, 성종 9년 6월 10일(경자)

80) 『성종실록』 권93, 성종 9년 6월 16일(병오) “上曰 光山西河固宜杜門自修 反欲與言者對辨 此甚不可”

81) 『성종실록』 권123, 성종 11년 11월 11일(정해)

간 동안에는 동지중추부사·홍문관 제학·이조판서⁸²⁾·대사헌⁸³⁾ 등을 역임하면서 홍문관의 설치·지리지의 편찬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조로부터 신임을 받았다.⁸⁴⁾ 성종 대에는 좌리공신에 올라 남원군에 봉해졌는데,⁸⁵⁾ 본인 스스로 論功行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공신에 책록되었다 하여 비난이 일기도 했다.⁸⁶⁾ 이후 양성지는 남원군으로서 국왕의 자문을 요하는 일에 관여하다가, 1477년(성종 8) 사헌부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양성지가 대사헌에 임명되자⁸⁷⁾ 대간에서는 그의 전력을 거론하면서 대사헌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⁸⁸⁾ 대간에서는 풍문을 근거로 양성지가 세조 대 이조판서 재임 시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판 일로 사대부들 사이에서 그를 더럽게 여기고 있다며, 그가 대사헌에 적합한 인물이 아님을 주장했다. 이에 양성지는 차자를 올려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면서 임금이 직접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고, 원상 정창손도 풍문탄핵의 폐단을 지적하며 양성지를 두둔했다.⁸⁹⁾

하지만, 성종은 ‘대사헌의 직임이 막중하니 일단 양성지를 체직시켜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한 뒤 시비를 가리게 하자’는 이조판서 강희맹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단 양성지를 대사헌에서 체임시켰다.⁹⁰⁾ 양성지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을 비방한 간원들의 처벌을 요구했지만,⁹¹⁾ 성종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양성지로 하여금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82) 『성종실록』 권34, 세조 10년 9월 8일(무오)

83) 『성종실록』 권36, 세조 11년 7월 27일(임신)

84) 『성종실록』 권142, 성종 13년 6월 11일(무신)

85) 『성종실록』 권9, 성종 2년 3월 27일(경자)·《성종실록》 권37, 성종 4년 12월 13일(기사)

86) 『성종실록』 권142, 성종 13년 6월 11일(무신) “上即位 誠之與金守溫吳伯昌上疏 請論功行封 遂參佐理功臣”

87) 『성종실록』 권85, 성종 8년 10월 2일(병신)

88) 『성종실록』 권85, 성종 8년 10월 4일(무술) “今以梁誠之爲本府大司憲 竊觀誠之本無操行 惟貨是貪 嘗爲吏曹判書 其門如市 頗有簞簞不飾之諺. 時人至以五馬判書目之. 且有席裏有段馬蹄加鐵之語 … 誠之醜聲如此 則豈可加之於糾察之地 而示衆庶也? 誠之所爲雖不目覩 然播在人口者如此 誠之其能俯仰無作 而彈舉貪黷乎? 其能使人聞風而膽落乎? 其人如此 清論可愧 不可不亟罷 以振臺綱.”

89) 『성종실록』 권85, 성종 8년 10월 5일(기해)

90) 『성종실록』 권85, 성종 8년 10월 5일(기해) “吏曹判書姜希孟啓曰 梁誠之事眞僞 雖未可知 然其任重 大 不可一日曠也. 換授何如? 傳曰可.”

91) 『성종실록』 권85, 성종 8년 10월 7일(신축)·10월 12일(병오)·10월 15일(기유)

말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양성지는 이후 공조판서와 같은 한직에 제수되었는데, 그마저도 또 한 차례의 탄핵을 받고 물러나게 된다.⁹²⁾ 그 밖에도 양성지는 2품 이하의 당상관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1등을 하여⁹³⁾ 승정대부 행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⁹⁴⁾ 십여 차례 이상 계속된 대간의 반대에 시달리고 나서야 가까스로 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482년(성종 13) 68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양성지의 사례를 통해서도 공신들이 전대와는 상당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나이 어린 성종의 즉위에 따라 국정 전반에서 정난공신 출신 원상들의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증대되긴 했다. 하지만 정난공신들의 연이은 사거에 따른 구심점의 약화, 원상제의 폐지, 공신들에 대한 대간의 활발한 탄핵 등으로 인해 공신 권력은 세조 대와 비교해 볼 때 크게 위축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4. 성종의 공신 비호 및 처벌

어린 성종을 보도하며 공신들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강화된 측면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공신들이 성종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지도 또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성종 역시 국정 수행에서 공신들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국왕의 권위를 통해 공신을 비호해 주었는가 하면, 일정 수준을 넘었다 생각될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92) 성종은 성현 등이 제기한 양성지에 대한 탄핵이 여전히 풍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지만 대간의 말이 대략 옳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종실록』 권104, 성종 10년 5월 5일(경신) “仍傳曰 予令議之者 只欲觀衆論如何而已. 且觀所議 位高者同一辭 位卑者亦一辭 何歟? 其曰 人非堯舜孰能無過? 此則古人泛論人物耳 不合此議. 其曰 君不密 則失臣. 此固不然. 假令人君 自摘臣下過失而言之 則所議是矣 今二人之事 則乃因諫官之論而然也 不當如是云也 然其大略 則是矣.”

93) 『성종실록』 권134, 성종 12년 10월 19일(경신)

94) 『성종실록』 권135, 성종 12년 11월 15일(을유)

먼저 성종이 공신들을 비호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앞의 오백창·김국광·양성지 등이 비리 혐의로 탄핵받고 있을 때 성종은 기본적으로 이들을 비호하는 입장을 취하며 대간의 처벌 요청을 쉽게 들어주지 않았다. 특히 오백창의 경우, 그가 탄핵을 당하는 과정에서 성종은 공신을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대간의 요구를 거부하거나,⁹⁵⁾ 그의 죄목이 추가되었을 때도 용서해주었다.⁹⁶⁾ 대비가 윤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처벌을 미루다가 원상들의 요청이 있고 나서야 겨우 고신을 회수했으며,⁹⁷⁾ 오백창에 대한 대간의 집요한 탄핵에 대해 ‘대간이 이기기를 힘쓴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⁹⁸⁾ 결국 익명서 문제로 대간과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직접 회수를 명하기는 했지만, 성종은 공신의 처벌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정인지의 경우, 그의 가노들이 주인을 믿고 사람을 때려 죽인 일로 탄핵을 당한 일이 있었다. 대간에서는 “훈구 대신이라고 해서 국문하지 않는다면 세력 있는 자들이 모두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며 국문을 요청했다.⁹⁹⁾ 사관은 논평을 통해 “정인지는 여러 조정의 勳老라고 생각하여 지주 국법을 범하여도 불문에 붙이므로, 그 중들이 이것을 믿고 방자하기가 이와 같다.”며 정인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었다.¹⁰⁰⁾ 하지만 성종은 “종의 범한 바가 어찌 그 주인에게 관계되겠는가?”라고 말하거나,¹⁰¹⁾ “알지 못하는 바를 가지고 무리하게 죄를 주는 것은 훈구 대신을 대접하는 도리가 아니다”면서 징계를 거부했다.¹⁰²⁾

성종은 원로 대신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정인지 등에게 拜老 의례를 시행하려 했다.¹⁰³⁾ 하지만 대간에서는 정인지가 長利를 통해 치부를 일삼는 등 三老로 일컬어질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논쟁이 일어났다.¹⁰⁴⁾ 그 과정에

95) 『성종실록』 권16, 성종 3년 3월 16일(임자); 3월 29일(을축); 권17, 3년 4월 2일(무진)

96) 『성종실록』 권18, 성종 3년 5월 4일(경자); 권21, 3년 8월 3일(정묘)

97) 『성종실록』 권21, 성종 3년 8월 10일(갑술); 12일(병자)

98) 『성종실록』 권21, 성종 3년 8월 17일(신사)

99) 『성종실록』 권23, 성종 3년 10월 13일(병자)

100) 『성종실록』 권23, 성종 3년 10월 6일(기사)

101) 『성종실록』 권23, 성종 3년 10월 14일(정축)

102) 『성종실록』 권23, 성종 3년 10월 18일(신사)

103) 『성종실록』 권88, 성종 9년 1월 27일(경인)

서 정인지는 대간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려 스스로를 변명하자, 대간이 피형을 청하며 정인지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렸다.¹⁰⁵⁾ 성종은 한편으로는 정인지가 대간의 국문을 청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여러 조정을 섬긴 80세의 원로를 어찌 책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일을 확대시키지 않았다.¹⁰⁶⁾

좌익공신 황효원은 처첩 분간 문제와 아들 황준경이 사간원 서리를 구타한 일이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이때 성종은 “황효원은 勳臣인데 문자나 언어 따위의 일로 그를 어찌 책망하겠는가”라거나, “황준경은 훈신의 아들로 곤욕을 당하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고 말하면서 황효원과 그의 아들까지 비호해 주었다.¹⁰⁷⁾

이 밖에도 유자광이 임사홍·김언신 등과 봉당을 조성해 현석규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1년 여 가까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성종은 “공신을 대우하는 의리에 어긋남이 있으니 공신 녹권을 돌려 주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다.¹⁰⁸⁾

성종이 대간의 거센 탄핵으로부터 공신들을 비호해 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마냥 감싸주지만은 않았다. 국왕으로서의 권위가 침해당했다고 여겨질 때면,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했고 심할 경우 공신이라도 사형에 처했다.

성종은 한명회의 종이 권세를 빙자해 폐단을 일으키자 경연 석상에서 이를 직접 거론하며 한명회에게 주의를 주었다. ‘한명회가 시킨 일은 아닐지라도 종들을 경계시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에 한명회는 대죄를 청한 일이 있었다.¹⁰⁹⁾ 또한 성종이 대비의 철령 과정에서 나온 한명회의 실언을 문제 삼아, 대간의 거센 탄핵을 불러일으켜 결국 한명회가 체직되었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¹¹⁰⁾ 이 밖에도 성종 12년 사신 접대

104) 『성종실록』 권89, 성종 9년 2월 19일(임자); 20일(계축)

105) 『성종실록』 권89, 성종 9년 2월 21일(갑인)

106) 『성종실록』 권89, 성종 9년 2월 23일(병진)

107) 『성종실록』 권69, 성종 7년 7월 3일(갑진)

108) 『성종실록』 권103, 성종 10년 4월 17일(계묘)

109) 『성종실록』 권74, 성종 7년 12월 15일(갑신)

110) 『성종실록』 권63, 성종 6년 1월 14일(기미)

과정에서 한명회가 자신의 압구정에 사신을 초청하는 문제로 성종과 갈등을 빚으며 무례를 범했는데, 성종은 사헌부로 하여금 한명회를 국문할 것을 명하였고,¹¹¹⁾ 한명회는 결국 대간의 거센 탄핵을 받다가 직첩을 회수당하였다.¹¹²⁾

한편, 성종의 공신에 대한 처벌은 경고·체직·직첩 회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신숙주의 아들이자 좌리공신이었던 신정의 사례가 그에 해당한다.

신정은 신숙주의 넷째 아들로 1466년(세조 12) 과거에 합격한 뒤 이듬해 예문관직제학에 超遷되었고,¹¹³⁾ 1468년(예종 즉위년) 병조참지·병조참의를 거쳐¹¹⁴⁾ 1469년(성종 즉위년)에는 동부승지를,¹¹⁵⁾ 1471년(성종 2)에는 좌부승지로서 좌리공신 4등에 책봉되었다.¹¹⁶⁾ 그 뒤 1474년(성종 5)에는 도승지에,¹¹⁷⁾ 1475년(성종 6)에는 이조참판에¹¹⁸⁾ 이르는 등 부친 신숙주의 후광에 힘입어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다가, 1475년(성종 6) 6월 신숙주의 사망으로 잠시 관직을 그만두었다.

상을 마치고 관직에 복귀한 뒤로부터 신정에 대한 대간의 탄핵이 점차 확대되었다. 사실, 신정은 과거 시험을 치를 때 동료의 답안지를 베껴 썼다는 의문이 제기되며 물의가 일었던 적이 있었고, 성종 초의 사신 논평 가운데는 그의 탐욕스러운 성품을 지적하는 기사도 보인다.¹¹⁹⁾ 하지만 세조의 공신에 대한 예우 덕분에, 또 신숙주가 성종 초반까지 원상으로 재직하는 상황 속에서, 신정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지는 않았다.¹²⁰⁾ 그럼에도 대간에서는 일찍부터 신정의 비리를 주목하고 있다가 신숙주 사망 이후 신정에 대한 탄핵을

111) 『성종실록』 권130, 성종 12년 6월 25일(무진); 26일(기사)

112) 『성종실록』 권131, 성종 12년 7월 4일(정축)

113) 『세조실록』 권41, 세조 13년 3월 1일(병인)

114) 『예종실록』 권5, 예종 1년 4월 17일(경오)

115) 『성종실록』 권1, 성종 즉위년 12월 29일(무인)

116) 『성종실록』 권9, 성종 2년 3월 27일(경자)

117) 『성종실록』 권46, 성종 5년 8월 6일(무자)

118) 『성종실록』 권56, 성종 6년 6월 17일(갑오)

119) 『성종실록』 권46, 성종 5년 8월 6일(무자)

120) 『성종실록』 권38, 세조 12년 3월 10일(신해)

본격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정에 대한 탄핵은 1477년(성종 8)에는 使行을 떠나는 通事를 통해 이의를 도모하였다는 이유로,¹²¹⁾ 1478년(성종 9)에는 청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¹²²⁾ 1479년(성종 10)에도 역시 청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제기되었다.¹²³⁾ 그리고 1481년(성종 12)에는 여종의 집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았다.¹²⁴⁾ 하지만 성종은 신정에 대한 탄핵을 번번이 거부했다.¹²⁵⁾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성종은 공신들에 대한 대간의 탄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은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요청을 수용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결과 신정은 계속해서 승진을 거듭하며 대신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1482년(성종 13) 3월에 이르러 신정에 대한 성종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하고 만다. ‘印信 위조’ 문제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우호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신정의 인신 위조 사건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482년(성종 13) 3월이었다. 신정이 평안도관찰사로 재직하면서 인신을 위조해 差帖을 작성했다는 의문이 일자 성종은 ‘신정이 차마 그런 짓을 했겠느냐며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伴人の 差帖을 들이고 영동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¹²⁶⁾ 사헌부에서는 신정을 체포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지만, 성종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또 그가 신숙주의 아들인 만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평안도 관찰사직만을 체직시킨채 자진해서 상경할 것을 명하였다.¹²⁷⁾ 이후에도 성종은 신정이 위조했다는 伴人の 差帖을 살펴보고 위조된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

121) 『성종실록』 권79, 성종 8년 4월 17일(갑인)

122) 『성종실록』 권97, 성종 9년 10월 7일(을미) “許琛曰 參判申澣 雖資質明敏 亦不副物望者也. 權衡人物 豈此兩人當之. 臣恐銓選未得其精也. 上曰 參判之不副物望者 何事? 琛曰 物論皆以謂不清簡.”

123) 『성종실록』 권103, 성종 10년 4월 26일(임자)

124) 『성종실록』 권125, 성종 12년 1월 5일(경진)·1월 16일(신묘)

125) 『성종실록』 권97, 성종 9년 10월 7일(을미) “上曰 申澣爲都承旨時 無錯誤事. 今爲參判亦無過舉 且未知某事不清簡 但以無據之言 遽遞其職 甚不可也.”

126) 『성종실록』 권139, 성종 13년 3월 30일(무술)

127) 『성종실록』 권140, 성종 13년 4월 2일(경자) “下書平安道觀察使申澣曰 今憲府以卿爲造伴倘文甫羅金巾金理等差貼 啓請拿來. 然僞造與否 時未的知 且卿高靈君之子 又於今年救荒諸事 盡情措置 故勿令拿來 遞卿本職 斯速上來.”

인하였지만, 신중한 자세를 보이며 계속해서 그의 체포를 허락하지 않는 등 그를 감싸주었다.¹²⁸⁾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신정이 차첩과 차첩에 찍힌 인신을 위조했다는 사실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었다. 신정의 반인들이 공초를 받으며 그들이 신정으로부터 직접 차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었고, 신정의 상경 또한 늦어지고 있던 점들이 신정의 위조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인식되고 있었다.¹²⁹⁾ 결국 성종은 신정을 의금부에 하옥시키고 사실을 분간을 위해 그에 대한 추국을 명했다.¹³⁰⁾ 조정 신료들은 그에게 형신을 가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¹³¹⁾ 이에 성종은 신정에게 사실을 고백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형신을 가할 수밖에 없음을 전달했다. 그리고 그가 승지 시절 判付에 쓴 기록들을 수거하여 차첩에 적힌 글씨와 대조하도록 했다.¹³²⁾ 성종의 입장에서는 신정에게 자백을 권하는 최후통첩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성종의 기대와 달리 신정은 옥중에서 여전히 거짓으로 상소를 올렸다. 자신은 조금이나마 시비를 알고 있는 자로서, 그리고 勳府에도 참여하고 벼슬이 재상에 이른 자로서 이런 일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伴人 文甫羅·金理·金巾 등은 모두 자신과 사적인 인연이 있는 자들로서, 이들이 差役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반인이 되기를 원하기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兵曹의 서리 金起野에게 陳省單子를 갖추어 주고 김기야로부터 差帖을 받았던 것인데, 지금 김기야가 죽고 없어 확인할 길이 없으니 매우 난처하다고 변명했다. 또한 忠孝와 清白을 家風으로 삼아 이의 실천을 당부했던 부친 신숙주의 유훈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이 差帖을 위조하지 않았음을 다시금 강조했다.¹³³⁾ 이는 죽은 병조 서리 김기야와 자신의 반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

128) 『성종실록』 권140, 성종 13년 4월 5일(계묘)

129) 『성종실록』 권140, 성종 13년 4월 10일(무신)

130) 『성종실록』 권140, 성종 13년 4월 14일(임자)

131) 『성종실록』 권140, 성종 13년 4월 19일(정사)

132) 위의 주 참조. “遣右承旨李世佐于義禁府問濬曰 予初不疑偽造 故勿令拿來 今事勢片無自明之理 其無隱直服 如其不服 多受刑杖. 又傳曰 濬承旨時 判付筆跡 無遺取來 且差帖字畫 示曾爲濬同僚者.”

133) 『성종실록』 권140, 성종 13년 4월 19일(정사)

는 것으로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변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정의 필적으로 의심되는 차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변명은 구차할 따름이었다. 더구나 이극배·강희맹·양성지 등 신정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차첩이 신정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사실도 밝혀진 상황이었다.¹³⁴⁾ 이에 성종은 신정이 거짓을 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형신을 가하도록 명하였고,¹³⁵⁾ 형신을 가하자 신정은 차첩에 적힌 병조 당상과 낭청의 署名은 자신이 직접 쓴 것이고 印信은 김기야를 시켜 위조했다고 자백하고 만다.¹³⁶⁾

성종은 신정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대신들로 하여금 收議하도록 했다. 한명회·정창손·심희 등 영돈녕 이상의 의논에서는 사형을 감하고 외방에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¹³⁷⁾ 하지만 성종은 대간 및 정부와 육조에 한명회 등의 의논을 보게 한 뒤 그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신정을 사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형을 감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성종은 대신들의 논의를 살펴본 뒤 다소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신정은 ‘뒤에 비록 일이 탄로나더라도 나는 功臣이고 宰相이니, 반드시 重罪로 논하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한 것으로, ‘이는 君上을 무시하고 朝廷을 무시한 것인데 도리어 거짓으로 꾸며서 上書하였으니, 이것은 거듭 임금을 기망한 것이다.’고 진노하면서,¹³⁸⁾ 관대하게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성종은 ‘외방 유배’와 같은 가벼운 형전을 사용하지는 의견을 내었던 영돈녕 이상을 불러 보다 강경한 대신들의 조율 내용을 회람하도록 하였다. 이에 정창손·한명회 등은 ‘신정을 공신적에서 삭제하고 처자를 종으로 삼자’는 의견을 내는 등 처음보다 다소 중한 형벌을 요청했다. 하지만 성종은 ‘자신이

134) 『성종실록』 권140, 성종 13년 4월 20일(무오) “命召申澣爲承旨兵曹叅議吏曹工曹叅判時同僚堂上郎廳等 馮問其差帖字畫. 李克培·姜希孟·梁誠之·李克增·韓繼禧·尹繼謙·柳攄·湖山君鉉·金順命·金自貞·李祐甫·尹起礪·安瑚·尹碩輔·宋瑛·柳文通·愼守勤·徐赴·李昌臣·鄭以僑·李復善啓曰 差帖內筆跡 申澣手筆相似.”

135) 위의 주 참조. “傳曰 知道. 卽命禁府堂上 除隨駕 卽拷訊申澣以啓.”

136) 『성종실록』 권140, 성종 13년 4월 21일(기미)

137) 『성종실록』 권140, 성종 13년 4월 21일(기미)

138) 『성종실록』 권140, 성종 13년 4월 22일(경신)

말한 것이 이런 정도가 아닌데 벌이 어찌 여기에 그치느냐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었다.¹³⁹⁾ 그러고는 신정의 賜死에 대한 可否를 대신들로 하여금 직접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윤사훈과 성숙만이 可하다고 하였고 정창손·한명희 등 나머지는 여전히 사사에 반대했다.¹⁴⁰⁾ 이에 성종은 경연에서 그리고 승정원과 홍문관에도 또다시 의견을 구하였는데, 승정원에서는 사사하자는 의견이, 홍문관에서는 조위 등 11인이 減死를 안윤손 등 3인은 사사의 의견을 내었다. 그 과정에서 대신 이승소가 늦게 의논에 참여하여 減死하자는 의견을 내었으나 ‘결단은 임금에게 달려있는 것인데 어찌 신정을 비호하느냐면서 면박을 받았다.’¹⁴¹⁾

성종은 결국 신정을 사사하라는 명을 내리고 승지들로 하여금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傳旨를 작성하게 했다. 하지만 승정원에서 작성한 전지의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치자 죄상을 밝힌 내용이 소략하다면서 ‘拜辭하는 날 임금을 속였고, 上書하여 임금을 속였으며, 承旨를 통해 親問할 때에도 임금을 속였다’는 내용의 삽입을 직접적으로 명하였고, 승지들은 待罪한 뒤 성종이 지시한 내용에 부합하는 전지를 새로 작성했다. 결국 신정은 賜死되고 공신 적에서도 삭제되었으며 자손은 금고당하는 중형을 받게 되었다.¹⁴²⁾

좌리공신이자 신숙주의 아들이었던 신정에 대한 사사는 성종과 공신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성종이 신정을 사사한 직접적인 이유는 인신 위조 때문이라기 보다 신정이 끝까지 성종을 기만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죄를 자복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거짓으로 일관된 그의 태도에 성종은 격노했고, 마침내 군주 기망죄로 규정해 사사시킨 것이었다. 분명한 사실은 성종은 한명희나 정창손과 같은 훈구 대신의 조율이 미흡하다고 거부하며, 자신이 원하는 최고로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정 신료들의 논의를 이끌어 갔다는 점이다. 성종은 공신들을 비호해 줄 수도 또 사사시킬 수 있을만큼 국왕으로서의 권위와 통치 능력을 발휘하고 있

139) 『성종실록』 권140, 성종 13년 4월 22일(경신)

140) 위의 주 참조.

141) 『성종실록』 권140, 성종 13년 4월 23일(신유)

142) 『성종실록』 권140, 성종 13년 4월 24일(임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성종과 공신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 성종은 공신들의 적극적인 보필 속에 군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며 성장해 나갔다. 원상제의 시행 속에 공신들은 성종에게 위협이 될만한 요소들을 제거하는가 하면, 덕종 추숭을 통해 정통성 확립에도 도움을 주었다. 또한 세조 대 무리하게 시행된 제도들을 수정하고 1일 3강 체제의 경연을 시행하는 등, 대체로 공적인 국정 운영의 틀 속에서 성종을 보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조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던 종친들이 배제되고 공신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며 이들의 위상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다.

둘째, 신숙주, 최항 등 정난공신 출신 원상들이 하나 둘 사거해 갔고, 공신들의 응집력과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수순을 밟고 있었다. 더욱이 성종 7년 원상제까지 폐지되어 공신들이 국정의 중핵으로 일할 수 있는 공적 기회는 그만큼 축소되었다. 또한 성종 즉위 초부터 대간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신들 역시 대간의 탄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오백창·김국광·양성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리 공신들에 대한 대간의 집요한 탄핵이 제기되면서 공신들의 운신의 폭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었다.

셋째, 성종은 대간의 탄핵으로부터 공신들을 비호하기도 또 비리에 대해 엄벌에 처하기도 했다. 즉위 초부터 이루어진 대간의 활발한 탄핵 활동에서 성종은 공신을 비호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공신이라 할지라도 군주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처사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례로, 신숙주의 아들이자 한명회의 사위이며 본인은 좌리공신이었던 신정은 거둬된 거짓 해명을 일삼다 사형에 처해졌다.

넷째, 성종과 공신의 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 공신들의 권력이 성종을 일

방적으로 압도할 만큼 그렇게 공고하지도 않았으며, 성종이 새로운 세력을 등용시켜야 할 만큼 갈등이 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체로 성종은 공신을 우대하고 있었지만, 필요할 경우 공신을 사사하기도 했다. 국왕과 공신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왕과 공신에 대한 설명 및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사림파의 등장이라는 서사에 맞추어져, 성종과 공신을 상호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한 채, 성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림을 중용했고 공신들은 그런 사림과 대립했다는, 당시의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 역사상이 설정되었다.

그렇다면 공신들의 보호를 받으며 즉위와 통치에 임했던 성종에게 공신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으며, 양자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인가? 성종 즉위 초반만 하더라도 공신들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성종의 치세 기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조정에서의 공신들의 비중은 점점 약해져 갔다. 성종과 공신의 관계는 세조 대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성종에게 있어서 공신들은 자신의 즉위를 돕고 幼主의 등장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었던 불안한 변수들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 고마운 존재이긴 했지만, 권력관계의 변화 속에서 대간의 탄핵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부담을 안겨주는 존재이기도 했다. 따라서 성종에게 있어서 공신이란 그 지위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어야 하면서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권력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다소 복잡한 의미를 지닌 존재들이었다고 생각된다.

사실 세조의 집권과 더불어 시작된 공신들의 과도한 권력 장악은 세조 대 이전 공신들의 영향력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세조 대 이전의 공신책봉은 정권의 창출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던 단회적인 속성을 띠었다.¹⁴³⁾ 하지만 세조의 집권을 계기로 공신 책봉은 새로운 권력 형태로 변화되어 갔다. 즉 즉위 단계까지만 이루어지던 공신 책봉이 치세 중에도 지속되

143) 세조대 이전의 공신 책봉은 조선왕조 개창 과정에서의 開國功臣과 太宗의 집권 및 즉위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定社功臣과 佐命功臣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佐命功臣의 책봉 후 태종의 치세 기간과 세종·문종의 재위 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의 공신 책봉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며, 공신 책봉을 통한 권력 집중이 정국을 안정시키는 방편으로 활용되었다.¹⁴⁴⁾ 따라서 세조 대의 공신들은 태종 대와는 달리 집권 이후에도 관료 사회의 일원으로 녹아들기보다는 별도의 특권 그룹으로 존재하면서 공적인 국정 운영을 저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세조 대 형성되었던 특권 집단으로서의 공신들의 권력이 성종의 치세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성종 대의 정치 환경은 세조 대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기에, 성종과 공신들과의 관계 역시 세조 대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공신 책봉이 거듭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신 집단의 헤게모니가 지속되기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즉위 초반만 하더라도 공신들은 성종의 권력 기반으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성종은 공신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을 가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공신들에 대한 태도 역시 세조처럼 전적으로 의지하는 형세를 취하지 않아도 됐다. 다시 말해 국왕의 신임을 받는 소수의 핵심 인사들이 중첩적으로 공신에 책봉되면서 지속적으로 혹은 배타적으로 권력을 유지해 왔던 방식은 성종 대에 이르러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정난공신들의 연이은 사거 속에 공신들 내부에서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신숙주·한명회처럼 공신 권력의 중심을 담당할 인사가 등장하지 못함에 따라, 공신 그룹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어졌다.

또한 공신이라는 지위 자체가 국왕과의 특별한 인연에 기초하고 있었던 만큼, 공신들의 권력은 그들에 대한 국왕의 전폭적인 지원이 어려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원상제와 같은 공적 기제가 사라지고 공신 권력의 유지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종과의 유대관계까지 점차 약화되어 간 상황은 공신들에게는 그만큼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세조대 이래 국왕과 소수의 측근세력이 공신 책봉을 매개로 협력

144) 세조 집권 하의 공신책봉은 癸酉靖難에 대한 논공행상인 靖難功臣의 책봉으로 다시 부활된 뒤, 세조의 즉위를 기념하는 佐翼功臣이 한 차례 더 책봉되었는데, 여기까지는 태종대의 공신책봉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지만 左翼功臣 책봉 이후에도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면서 敵愾功臣을 책봉함으로써 또 한 차례의 공신책봉이 이루어졌다.

관계를 유지하며 공고한 집권력을 행사하던 국정 운영 방식은, 세조의 사망을 계기로 서서히 약화 되다가 성종 대에 이르러 더 이상의 존속이 어려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세조 대 이래 관료제의 운영에 부담을 지우는 비정상적인 공신 권력의 재생산 구조 역시 붕괴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공신들은 공신으로서의 지위를 내세우며 특권을 도모하기보다는 관료조직 속의 한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성종과 공신들은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종이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세력을 등용시켜야 했던 상황도 아니었다. 성종은 공신들을 적절하게 예우해 주며 그들의 자연스런 퇴장을 인도해 줬다. 그리고 성종의 치세 동안 주요 관직을 거처며 성장해 나갔던 관료들을 파트너로 삼아 국정을 운영해 나갔다. 그런 측면에서 성종 대 공신들의 뒤를 이어 대신으로 성장했던 관료들을 굳이 공신 집단과 구별되는 별도의 정치세력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언론 삼사에 재직하며 공신들을 탄핵했던 인사들은 공신들과 구별되는 정치세력이 아니라, 관료제의 틀 속에서 청요직을 거쳐 대신으로 성장해 나갔던 인사들이었다. 성종은 이 같은 정치 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공신 및 후속 세대의 관료들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왕의 측근 세력으로 기능하던 공신 그룹이 약화되어 감에 따라, 성종에게는 집권력을 강화시킬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다시 말해 왕으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는 특권 그룹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왕으로서 어떻게 관료조직을 통제하며 자신이 구상하는 정치 운영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주어졌던 것이다. 참고로 사림 서사에서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삼사의 적극적인 언론 활동은 국왕의 권력을 제어하는 속성을 갖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성종의 왕권은 관료조직 내의 권력관계의 변화 및 새로운 권력구조의 등장 속에서 새롭게 규정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림 서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서사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 참고문헌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 강재훈, 「조선 초기 勳戚 韓明澮의 관직 생활과 그 특징」, 『역사와 실학』 43, 2010.
- 김갑주, 「院相制의 成立과 機能」, 『동국사학』 12, 1973.
- 김 범, 「조선전기 院相 家門의 변천과 그 의미 -勳舊勢力 파악의 한 사례연구-」, 『史叢』 49, 1999.
- 김우기, 「朝鮮 成宗代 貞熹王后의 垂簾聽政」, 『조선사연구』 10, 2001.
- 김원혁, 「조선 성종대 '領敦寧以上' 집단의 성립과 정치활동」, 『한국사론』 64, 2018.
- 송웅섭, 「조선 성종대 전반 언론의 동향과 언론 관행의 형성」, 『한국문화』 50, 2010.
- _____, 「조선 성종대 공론정치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_____, 「성종대 臺諫 避嫌의 증가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2, 2012.
- _____, 「朝鮮 成宗의 右文政治와 그 귀결」, 『奎章閣』 42, 2013.
- _____, 「성종의 즉위와 국정운영방식의 변화」, 『史學志』 49, 2014.
- _____, 「조선 전기 청요직의 위상과 인사이동 양상」, 『韓國思想史學』 55, 2017.
- _____, 「기묘사림과 '공론지상주의」, 『역사와 현실』 108, 2018.
- 유승원, 「조선시대 '양반' 계급의 탄생에 대한 시론」, 『역사비평』 79, 2007.
- 이태진, 「朝鮮時代의 政治의 갈등과 그 해결-士禍와 黨爭을 중심으로-」,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범조사, 1985.
- _____, 「黨派性論 批判」, 『한국사시민강좌』 1, 일조각, 1987.
- 임혜련, 「朝鮮時代 垂簾聽政의 정비과정」, 『조선시대사학보』 27, 2003.
- 全宗燮, 「朝鮮 成宗朝 佐理功臣에 關한 一考察 - 그 性分의 動向을 中心으로 -」, 『大丘史學』 18, 1980.
- 鄭杜熙, 「朝鮮 世祖-成宗朝의 功臣研究」, 『震檀學報』 51, 1981.
- 최이돈, 「조선중기 사림정치구조 연구」, 일조각, 1994.
- 한영우, 「王權의 確立과 制度의 完成(世祖-成宗)」, 『한국사』 9, 1974.
- 韓忠熙, 「朝鮮世祖代(1455~1468) 宗親研究」, 『韓國學論集』 22, 1995.
- _____, 「朝鮮 世祖代의 內宗親에 대하여」, 『慶北史學』 21, 1998.
- _____, 「왕권의 재확립과 제도의 완성」, 『신편한국사』 22, 2002.
- 한형주 「성종 대 의경왕의 추송과 연은전의 운영」, 『藏書閣』 40, 2018.

A Review of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King Seongjong and Hungu Gongsin

– Did Seongjong and Hungu Gongsin have a Antagonistic Relationship –

Song Woong-sup*

This study moves away from the Sarim narrative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ungjong and Hungu Gongsin in the context of the 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ngjong and Hungu Gongsin is generally understood to be antagonistic. However, in the context of the early Joseon period, which did not tolerate the Bungdang, it is not appropriate to set the king and the Hungu official in an antagonistic relationship. Ascending to the throne at a young age, Sungjong overcame many obstacles with the support of Hungu Gongsin. However, he was exercising his authority appropriately by shielding Hungu Gongsin from the press and executing those who deceived him.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the Sungjong dynasty was one of declining The Power of the Hungu Gongsin. The power of the Henggu officials was difficult to sustain while maintaining a close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 monarch, as in the case of the Sejo dynasty. The task given to Sungjong was not to suppress Hungu officials. The real challenge was gaining control of the entire bureaucracy in the absence of a crony like Hungu Gongsin. We need to revise the Sarim narrative in the context of the time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Chongshin University

Key words : King Seongjong, Hungu Gongsin, Wonsang, Power Relationship,
Sarim Narrative